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용연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
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
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을
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지도·
감독을 받는 건축물 중 기부채납에 의해 사용·관리하는
시설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
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.

이에 교육청 및 교육감이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받아 사용·관리하는 건축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증 대상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촉진하고자 합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적용 범위에 기부채납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부채납에 의한 건축물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애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